

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09. 8. 11 조례 제2216호
일부개정 2017. 7. 28 조례 제2857호
일부개정 2019. 3. 5 조례 제3042호(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 2019. 7. 1 조례 제308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장애인가정”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.
2. “출산지원금”(이하 “지원금”이라 한다)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자)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. 다만,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7. 28>

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액)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 다만,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. <개정 2019. 7. 1>

1.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 100만원 이내
2.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: 70만원 이내

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.

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

③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「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3. 5>

제5조(지원신청 등)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절차) 시장은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1.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
2.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

제7조(환수조치)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7. 7. 28 조례 제285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3. 5 조례 제3042호,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
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「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 <2019. 7. 1 조례 제308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